

의안번호	2203930
의 피 인	신성범의원
회 답 일	2024. 10. 18.
추계번호	24B375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억 4,000만원(연평균 4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4조의6)	180	617	712	358	372	2,240	448

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농촌 및 어촌 빈집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4조의6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u>빈집정보시스템</u>”이라 함)을 <u>구축·운영</u>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전문기관</u>이 <u>구축·운영</u>하게 할 수 있음(제4항)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임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4조의6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4조의6)

- 현행법 제64조²⁾에 따라 시·군·구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2.5	5.1	3.6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 상승률	0.7	5.0	4.9	2.5	3.2	3.6	3.9	3.8	3.8	3.8	3.8

2) 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매입·철거·개축·수리·활용 등을 추진중

※ [참고자료 1] 농어촌 빈집 관리 현황 참고

□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도·농 빈집정보플랫폼(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³)를 구축('18.3.)하여 17개 시·도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차원의 별도 시스템 구축은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부터 지자체의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지자체의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빈집은행 활성화와 빈집 재생에 대해서도 지원을 신설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어촌개발사업업무지원시스템'에 빈집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사업과 빈집정보 연계 추진

[그림 1]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플랫폼 홈페이지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통합 정보 시스템 <<https://binzib.reb.or.kr/>>
- ※ [참고자료 2]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 개요 참고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구축·운영중인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구축·운영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전국 17개 시도의 위탁에 따라 전국 단위의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
 - (시스템 구축비용) 시스템 개발 1.5억('19년), 1차 고도화 2.4억('21년), 2차 고도화 3.3억('23년) 등 총 7.2억원
 - (시스템 운영비) 유지관리 인력(중급기술자) 3명, 연간 2.98억원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농촌 및 어촌 빈집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26년), 1차 고도화('27년), 2차 고도화('28년)
 - ※ 이때, 시스템 구축비용은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구축 당시의 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1차 고도화 작업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유지·관리 인력(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
 - ※ 이때,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스템 구축	개발	180	—	—	—	—	180
	1차 고도화	—	285	—	—	—	285
	2차 고도화	—	—	366	—	—	366
	소계(A)	180	285	366	—	—	83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B)		—	333	345	358	372	1,409
합계(C=A+B)		180	617	712	358	372	2,240

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농촌 및 어촌 빈집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촌 빈집 관리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 (빈집 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시·군·구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매입·철거·개축·수리·활용 등을 추진
 - － 수립된 빈집 정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 (실태조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 관리·정비를 위하여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빈집 실태조사 지원중
 - － (해양수산부) 어촌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지역별 빈집 수, 철거 수 등)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어촌 지역빈집조사(행정조사)를 수행
- ※ 2023년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⁴⁾

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농어촌·도시 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절차 및 빈집의 등급기준 등 일원화,” 2023.6.8.

□ 최근 3년간 농어촌 빈집 현황

<최근 3년간 시·도별 농어촌 빈집 현황: 2021~2023년>

(단위: 동)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¹⁾			해양수산부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	—	—	—	—	—
부산	30	21	32	30	15	26
대구	530	528	1,108	—	—	—
인천	587	470	522	174	540	267
광주	—	—	—	—	—	—
대전	—	17	—	—	—	—
울산	821	743	528	8	2	1
세종	371	647	653	—	—	—
경기	2,448	2,481	2,410	69	23	9
강원	3,380	3,886	4,363	1,254	1,891	2,177
충북	2,030	3,466	3,135	2,030	3,460	691
충남	3,986	3,901	4,771	1,654	1,115	1,320
전북	9,434	9,904	10,092	7,903	1,144	1,273
전남	17,648	16,310	15,138	12,167	7,998	9,316
경북	13,774	13,886	12,043	6,758	3,829	2,469
경남	9,416	9,106	9,589	3,394	3,130	3,350
제주	748	658	635	615	525	544
합계	65,203	66,024	65,019	36,056	23,672	21,443

주: 1) 동 자료는 지자체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자료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주요내용

- **(목적)** 지자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에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정보제공)**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행정·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 가능
- **(빈집정보 공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가능

□ 도시 및 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비교

구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근거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구축·운영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전문(대행)기관	부동산원, 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부동산원,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어촌어항공단 등

□ 한국부동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과

연월	구 분	주 요 내 용
'18. 06.	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실태조사 결과 구축·운영
'18. 07.~'19. 11.	업무협약 체결	9개 시·도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21. 08.~'22. 03.	1차 고도화	대국민망(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및 행정업무망(빈집정보시스템) 구분 구성
'23. 08.	LX 빈집DB 이관	LX 빈집정보 8개 시·도 DB 통합
'23. 09.	신규 시스템 운영 및 협약체결	(대국민) 빈집현황(빈집 수) (행정지원) 17개 시·도 시스템 협약 체결
'23. 11.~'24. 07	2차 고도화	신규기능 추가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빈집추가 및 정비이력 현행화, 정보공개)